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(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)에 따른 「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2024년 2월 6일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의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고) ① 법 제2조에 따른 농장주, 개식용 도축·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(이하 "농장주등"이라 한다)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농장주 : 별지 제1호서식의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
2. 개식용 도축·유통상인 :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·유통 운영신고서
3.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: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3조(이행계획서 제출)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농장주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개식용

종식 이행계획서(이하 "이행계획서"라 한다)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농장주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·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0일
신고인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주소		전화번호	
신고내용	농장명(명칭)		농장 운영기간 년 월 일 ~ 년 월 일	
	농장 주소		농장 전화번호	
	현재 사육마릿수 (신고일 기준)	연평균 사육마릿수	실 사육면적 (케이지, 평사 등)	농장 총 면적
	마리	마리	㎡	㎡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사육농장의 운영을 신고합니다.

 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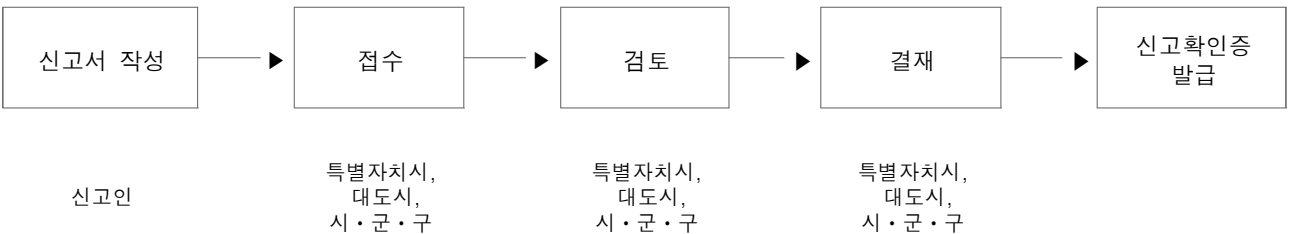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, 대도시의 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 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-----

처리절차



개식용 도축·유통 운영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0일
신고인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주소		전화번호	
신고내용	업소명		운영기간(개고기 취급일 기준)	
	사업자등록번호		년 월 일 ~ 년 월 일	
	주소		업소 전화번호	
	도축수(연평균) (도축업자만 해당)	거래량(연평균)	kg당 판매가격	영업소 면적
마리	kg	원	㎡	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식용 도축·유통의 운영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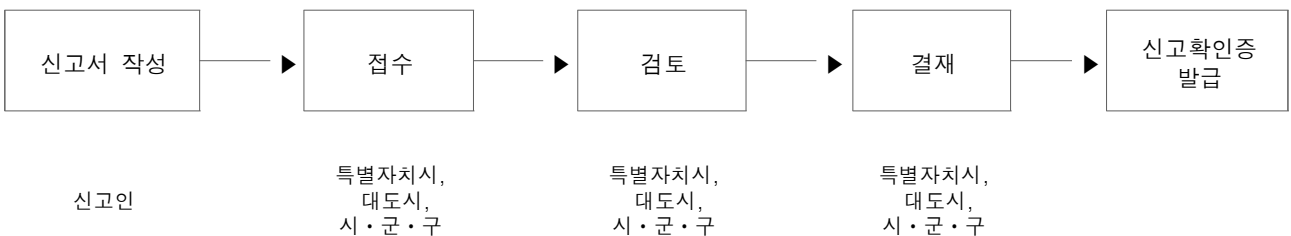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, 대도시의 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 없음

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

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0일
영업 정보	성명(대표자)		업소명(식품접객업 명칭)	
	주소		영업허가(신고·등록) 번호	
신고내용	취급 메뉴(<input type="checkbox"/> 개고기 조리 음식만 취급,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른 메뉴 취급)		운영기간(개고기 조리음식 취급일 기준)	
	개고기 사용량(연평균)	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년 월 일 ~ 년 월 일 </div>	
		kg	원	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식용 식품접객업의 운영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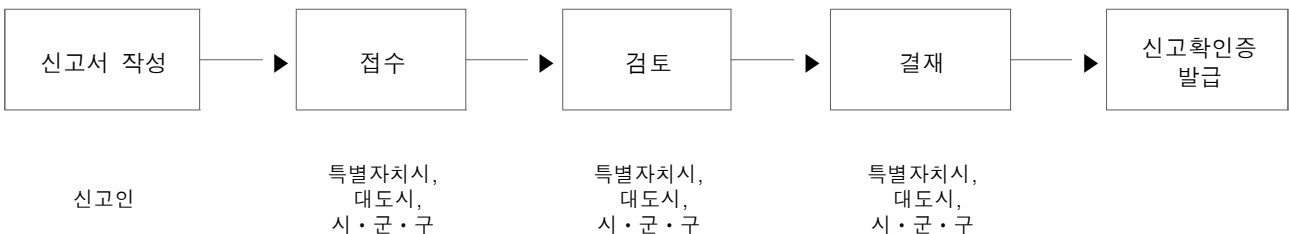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, 대도시의 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 없음

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

제 호

개사육농장 등 운영 신고확인증

1. 성명(대표자):
2. 상호(명칭):
3. 영업장 주소:
4. 운영 세부 종류:
(개사육농장, 개식용 도축·유통, 개식용 식품접객업)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제 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사육농장 등의 운영 신고를 수리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, 대도시의 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
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영업장	상호(명칭)/영업신고번호(개식용 식품접객업에 한함)	폐업예정일
	주소	전화번호

이행조치 계획사항	이행조치 사항	이행조치 일자
		. . . ~ . . .
		. . . ~ . . .
		. . . ~ . . .
		. . . ~ . . .

「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: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, 대도시의 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